

## 제 3 주차 : 주요 국제환경조약 I

### ■ 학습목표

국제환경조약의 각론 부분으로 생태계, 해양, 폐기물과 관련된 국제환경조약에 대하여 세부적 내용과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관하여 학습한다.

### ■ 주요 학습내용

#### 1. 생태계 분야

- (1) 생물다양성 협약과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 (2) 야생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 (3) 습지보호 협약 (Ramsa협약)

#### 2. 해양 분야

- (1) 런던협약
- (2)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범지구적 실천계획(GPA)

#### 3. 폐기물·유해화학물질 분야

- (1) 바젤협약과 책임배상의정서
- (2) 유해화학물질 사전통고승인(PIC) 로테르담 협약

## 1. 생태계 분야

인류 역사 이래 생태계가 오늘날처럼 위협받은 적이 없으며 그러한 위협 중 많은 부분이 인간의 활동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가속화는 생태계적인 차원을 넘어서 경제·사회발전에 있어서도 심각한 의미를 가진다. 최소한 세계경제의 40%가, 그리고 빈곤층이 필요로 하는 물품의 80%가 생물 자원에서 유래하며, 생물다양성이 더 풍부해질수록 의학적 발견, 경제발전, 기후변화 같은 새로운 도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장에서는 생태계 보호의 대표적 협약인 “생물다양성협약”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협약”, 그리고 “습지보호협약”에 관하여 살펴본다.

### (1) 생물다양성 협약과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 1) 개요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국제자원보존연맹(IUCN)과 UN환경계획(UNEP)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오다, 1992년 리우회의에서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 채택됨으로써 본격화되었으며, 169개국이 서명하고 1993년 12월 말 발효되었다. 생물의 다양성 보전은 경제적·생태학적·문화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유전정보의 보전과 생명공학적인 측면, 식량 증산을 위한 기술진보에도 매우 중요하다.

생물다양성협약은 경제개발에 기인한 생물종의 감소 또는 멸종을 방지하고,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활용과 생명공학 기술분야에 있어서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협력체제를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생물자원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대부분 개도국인 반면, 유전공학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선진국이고, 개도국은 유전자원 제공으로 인한 이익의 배분과 기술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데에 비해 선진국들은 개발상품에 대한 적절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협약은 기술선진국이 큰 목소리를 내는 기후변화협약과는 달리 생물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이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브라질, 인도, 말레이시아 등 그 동안 생물자원을 제공해 온 개발도상국들은 생물종을 사용한 유전공학기술의 결실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협력에 있어 패권주의적 안정이 아닌 다수당사자주의의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 -국제환경조약-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내용은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위한 일반적 조치, 유전자원에의 접근, 기술에의 접근 및 기술 이전, 생명공학의 관리와 이익 배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협약은 여타 환경 관련 국제협약과 같이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생물자원 보유국도 아니며 유전공학 기술보유국도 아닌 우리의 입장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

생물다양성협약에 의한 “바이오안전성 의정서(Bio Safety Protocol)”의 추진은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유전자 변형생물체(LMOs: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국가간 이동이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생태계 및 인간건강에 대한 위험을 관리·예방하는 한편, 이러한 관리조치가 유전공학제품의 국제거래를 불필요하게 저해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으로 추진되었다.

### 2) 우리나라 관련

“생물다양성협약”의 경우 우리나라는 생물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며 기술 선진국도 아닌 중간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방관적이었으나, 1994년 10월 협약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1995년 1월부터 국내에서 발효되었으며, “바이오안전성 의정서”는 2000년 9월 서명하였다.

국제적인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 보호 움직임과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 움직임은 해외의 생물자원 확보와 국내 고유기술 개발 등 생명공학기술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도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연구개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야생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 1)개요

일명 워싱턴협약이라 불리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은 1972년 6월 UN인간환경회의에서 협약 채택을 위한 회의를 거쳐 1973년 2월 워싱턴에서 채택되었으며, 1975년 7월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다양한 형태의 야생동식물은 현세대 및 후세대에 걸쳐 지구 자연계의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문화적·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 가치가 점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도한 개발과 국제무역을 통하여 멸종위기에 놓이게 된 야생동식물을 국제협력 하에 보호하자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 -국제환경조약-

야생동식물보호협약은 총25개 조항과 3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역규제대상 동식물, 수출입 허가서 및 증명서, 무역제한 면제 및 특별규정, 관리당국 및 과학당국 등에 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협약에서는 멸종 위기의 정도에 따라 1000여종의 협약대상 야생 동식물을 3개의 부속서에서 분류하고 무역규제의 제한을 각각 명시하였다. 당사국 의무조치로 이 협약의 규정을 시행하고 협약을 위반하는 무역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당사국은 해당 동식물의 거래에 대한 처벌과 몰수, 수출국으로의 반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울러 수출입자의 성명 및 주소, 거래상대국, 거래대상 동식물 등 교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

본 협약은 협약자체의 구속력뿐만 아니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호 의식이 높아지고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어 협약 미이행 국가에 대한 무역규제 움직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2) 우리나라 관련

우리나라는 선진국 및 환경 NGO로부터 전통의약품 등에의 CITES 품목 사용에 대한 비난 증대 분위기 불식과 92년 UNCED회의 이후 고양된 국·내외의 환경보호 노력에 동참을 위해 1993년 7월 협약에 가입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멸종위기 종의 불법 국외반출을 계속적으로 억제하고, 전통의약분야의 응답, 호골 등 CITES 규제대상 동·식물 사용 억제와 대체원료 개발에 대한 지원책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 (3) 습지보호 협약 (Ramsa협약)

#### 1) 개요

공식명칭이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 The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인 “람사협약”은 수조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및 식물의 기본적 서식지이자 가장 생산적인 생명부양의 생태계인 습지의 보호를 위해 1971년 2월 이란의 람사에서 채택되었다. 습지는 홍수와 한발을 조절하는 등 기후조정 역할을 하며, 아열대 해수 서식지는 가장 비옥한 건조용 목초지 보다 두배 이상의 유기물질을 생산하기도 한다. 본 협약은 채택 후 80년대까지는 활동이 저조했으나, 90년대 이후 생물다양성의 원천으로서 습지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주요한

## -국제 환경조약-

협약으로 대두되면서 최근들어 130여 개국으로 가입국이 증가했다.

### 2) 우리나라 관련

협약 가입시 최소 1개 이상의 국내습지를 협약의 등록습지로 등재해야 하는 협약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인 강원도 인제군 소재 '대암산 용늪'을 협약 등록습지로 등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을 경유하는 철새의 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이들의 서식지인 습지보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협약 가입으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97년 7월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창녕의 우포늪을 1998년 3월 협약 습지로 등록하였으며, 1999년 2월에는 습지보전법을 제정하는 등 습지보전 및 협약이행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

## 2. 해양 분야

해양환경의 오염은 공중의 건강, 식품, 경제적 풍요, 사회양상, 삶의 방식을 위협하고 있는 바, 해양의 오염은 산호초에 손상을 가해 어류 서식지를 파괴함으로써 식량안보(food security)를 위협할 수 있으며, 어업에 의한 소득의 상실은 자급자족과 경제적 풍요를 위협하고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파괴하므로 해양환경의 보호는 지구환경보호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번 장에서는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런던협약”과 “육상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범지구적 실천계획”을 살펴본다.

### (1) 런던협약

#### 1) 개요

공식 명칭은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이나 일반적으로 "London Convention" 이라고 한다. 1950년대와 70년대 사이에 대규모 유조선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양오염이 범지구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70년대 초반 해양이 무한정한 정화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대두됨에 따라 1972년 런던협약이 채택되고, 1975년 발효되었다. 이는 해양환경분야에서 최초의 범지구적 차원의 협약이며 여타 해상오염원 규제를 위한 국제법규범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협약은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 구조물의 고의적 해상 폐기와 그 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기타물질의 고의적 해상 폐기가 적용대상이나 다만, 선박·항공기·플랫폼 등의 통상적 운용에 수반되는 해상 폐기와 심해저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에서 발생한 폐기물 투기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2) 우리나라 관련

우리는 1993년 12월에 가입하여 1994년 1월에 발효되었다. 우리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투기가능품목을 별도 지정하는 Positive Listing System 운용중에 있으며, 서해가 폐쇄 해역인 점 및 중국으로부터의 폐기물 유입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동해에 대한 투기량을 증가시켜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 협약을 국내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폐기물

## -국제환경조약-

배출처리기준의 강화 및 해양투기 관련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실시 등 관련 국내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동해 핵투기문제 및 중국의 산업폐기물 투기에 의한 황해오염 등을 고려할 때 개정협약의 강화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2)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범지구적 실천계획 (GPA)

#### 1) 개요

공식명칭은“육상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범지구적 실천계획 (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to Adopt a Global Programme of A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Activities )”이다. 해양오염의 약80%가 인간의 육상활동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에 따라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육상활동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Agenda 21의 내용중 해양보호에 관한 제17장의 구체화를 위해 1995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육상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범지구적 실천계획 (Global Programme of Action)과 동 실천계획 이행을 위한 각국의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는 워싱턴 선언 (Washington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GPA에서는 하수(Sewage), 지속성유기오염물질(POPs), 방사성물질(Radioactivity), 중금속(Heavy metal), 유류(Oil), 영양염류(Nutrients), 침전 퇴적물(Sediment Mobilization), 쓰레기(Litter), 서식처의 파괴 및 물리적 변형(Physical alteration & DEstrution of habitats)을 육상활동에 기인한 오염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지구적 실천계획'은 엄격한 의미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발전과정에 있는 법'인 'Soft Law'로서 새로운 국제법이 형성되기 전단계 형태의 규범으로 볼 수 있음. 'Soft Law'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이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국가는 국제여론의 비난과 압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동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 조치를 취할 경우 실질적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범지구적 실천계획은 육상활동에 기인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규범체제 형성의 첫단계로 평가되며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 2) 우리나라 관련

최근 우리 연근해에도 대형 유류 오염사고 및 하수처리 미비로 인한 해

-국제 환경조약-

수의 부영양화 등으로 적조 및 콜레라가 발생하는 등 오염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실천계획의 내용을 국내적으로 적극 수용, 전향적으로 대처할 필요성 높다. 또한 범지구적 실천계획 내용을 참고, 육상오염원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위한 국가 실천계획의 작성 및 이를 위한 유관부처, 연구기관 간 업무분담 등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3. 폐기물·유해화학물질 분야

사회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매년 수십억톤의 폐기물이 전세계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폐기물 중 3억톤이 넘는 폐기물이 잠재적으로 인간과 환경에 유해한 독성, 폭발성, 부식성, 발화성, 감염성 폐기물이다. 그리고 상당한 양의 폐기물이 선진 산업국가로부터 동유럽·중부유럽 뿐만 아니라 개도국으로 이전되고 있는 바, 국가간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제적 규제는 국경을 이동하는 유해 폐기물의 통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제제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생산되어 적절한 관리, 처리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수출됨으로써 수입개도국의 주민의 건강 및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국제적 교역을 규제할 국제규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번 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바젤협약”과 “로테르담협약”에 관하여 살펴본다.

#### (1) 바젤협약과 책임배상의정서

##### 1) 개요

공식명칭이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esposal)”인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이 국경간 이동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인류건강에 대한 위협과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1989년 3월 채택된 협약으로 주로 선진국들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개도국에서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1970년대 초부터 구미제국을 중심으로 유해 폐기물이 아무런 사전연락이나 협의도 없이 국경을 넘어 이동됨으로써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으며, 그 후 구미 선진국들이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 아프리카 및 중남미 등의 지역으로 유해폐기물 등을 밀수출하여 부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함으로써 환경오염이 국제문제화 되자,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포함된 국제적 차원의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UNEP 등에서 논의되어 1989년 3월 스위스의 바젤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또한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따라 1993년부터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책임과 배상을 규율하는 부속의정서 초안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오면서 “책임배상의정서(Protocol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Resulting from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

and Their Disposal)”가 1999년 타결되었다.

이 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제교역규제에 대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개도국은 선진국으로부터의 무분별한 유해폐기물 수입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선진국은 대내적으로는 환경보호단체 및 여론에 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개도국과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본 협약은 규제대상이 되는 유해폐기물의 범위가 국가마다 다르면 통일적 규제가 곤란하므로 폐기물의 폐기경로와 함유되는 물질 등 양 측면에서 규제해야 할 유해폐기물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가입국들은 규제대상 물질의 국경간 이동금지조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자국 영토내에서의 폐기물발생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자국 영토내에 충분한 처리시설을 확보해야 할 의무도 부과된다. 수출규제측면에서 보면 가입국은 해당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 국가에 대해 수출을 해서는 안되고, 비가입국에 대해서도 규제대상 폐기물의 수출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남극지역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2) 우리나라 관련

우리나라는 1994년 2월에 가입하였으며, 협약의 내용에 따른 국내 폐기물관리 정책도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 유해폐기물의 규제는 총량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러한 접근은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하여 전체과정을 포괄하는 관리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등의 규정에 대하여 우리 보험업계 및 폐기물 수출업계의 새로운 대응책 강구가 요구된다.

## (2) 유해화학물질 사전통고승인(PIC) 로테르담 협약

### 1) 개요

60년대와 70년대에 화학물질에 대한교역이 증가하면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에서 기인하는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점증한 결과, 87년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과학적·기술적·경제적·법률적 정보의 상호교환을 통하여 화학물질의 국제거래시 각국정부의 화학물질 관리능력 제고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과 UN식량농업기구(FAO) 공동주관으로 「런던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이후 89 UNEP와 FAO는 수입국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동 유해화학물질이나 농약 교역시 수출전 사전통고승인(PIC : Prior Informed Consent) 절차를 채택하고 동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고, 이

## -국제환경조약-

후 이를 법규화 하기위한 결과로 1998년 9월 "국제 교역되는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에 사전통보승인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로테르담 협약(The Rotterdam Convention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이 체결되었다.

PIC는 참여국가가 자국으로 수입될지도 모르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화학물질의 특성의 파악을 용이하게 해주고, 장차 이러한 화학물질의 수입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타국가에 이러한 결정을 전달하는 것을 촉진하는 절차로서 그 목적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수출국가와 수입국가 공동의 책임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 2) 우리나라 관련

우리나라는 1999년 9월 동 협약에 서명하였고, 현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농약관리법에 의거, 자발적인 PIC 절차규정상의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생산 및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PIC 협약화에 따른 국내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작업이 크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PIC 대상물질의 확대에 따른 국내 화학산업에 미칠 영향 검토 및 담당 정부기관 지정 등 관련 제도 정비작업이 필요하다.

## 학 습 정 리

- ▶ 생태계 분야 협약
  - 생물다양성 협약과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 야생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 습지보호 협약 (Ramsa협약)
  
- ▶ 해양 분야 협약
  - 런던협약
  -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범지구적 실천계획(GPA)
  
- ▶ 폐기물·유해화학물질 분야 협약
  - 바젤협약과 책임배상의정서
  - 유해화학물질 사전통고승인(PIC) 로테르담 협약

## 학 습 문 제

- 생태계 분야 국제협약을 논하라.
- 습지보호 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을 논하라.
- 바젤협약을 논하라.

## 다음차 예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각론부분으로 대기분야, 산림과 관련된 주요 국제환경 조약들에 관하여 학습해 보기로 한다.